이 공간은 공용란임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서식 승인됨
관리예산처 번호 1651-0009

세관 신고서

19 미국연방규정집 122.27, 148.12, 148.13, 148.110, 148.111, 19 USC 1498; 31 USC 5316

입국하는 각 여행자나 가족의 책임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당 한부의 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가족"이란 "같은 가정에서 함께 살고있으며 혈연, 결혼, 동거, 또는 입양관계인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1 성

(성이 아닌) 이름 | 중간 이름

2 생년월일 월 | 일 | 년

3 함께 여행 중인 가족 구성원의 수

4 (ㄱ) 미국 내 주소 (호텔 이름/목적지)

(ㄴ) 도시 | (ㄷ) 주

5 여권 발행국

6 여권번호

7 거주국가

8 이번 여행중 미국에 입국하기전에 방문했던 국가

9 항공사/항공편 번호 또는 선박명칭

10 이번 여행의 주 목적은 사업임: 예 ☐ 아니오 ☐

11 본인(우리)의 반입 물품:

(ㄱ) 과일, 채소, 식물, 씨앗, 음식, 곤충: 예 ☐ 아니오 ☐

(ㄴ) 육류, 동물, 동물/야생생물 제품: 예 ☐ 아니오 ☐

(ㄷ) 병원체, 세포 배양물, 달팽이류: 예 ☐ 아니오 ☐

(ㄹ) 흙 또는 농장/목장/목초지를 방문함: 예 ☐ 아니오 ☐

12 본인(우리)은 가축에 근접한 적이 있음: (예를 들어 만지거나 다룸) 예 ☐ 아니오 ☐

13 본인(우리)은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외국의 통화 또는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음: (뒷면의 지급수단의 정의를 참조) 예 ☐ 아니오 ☐

14 본인(우리)은 상업용 물품을 가지고 있음: (판매용 물품,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견본, 또는 개인용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제품들) 예 ☐ 아니오 ☐

15 거주자—본인(우리)이 해외에서 구입 또는 취득하여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상업용 물품을 포함한 모든 재화(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포함하지만, 미국으로 우송한 물건은 제외)의 총가액: $

방문자—상업용 물품을 포함하여 미국에 남아 있을 모든 물품의 총가액: $

이 서식의 뒷면에 적힌 지시사항을 읽어보십시오. 귀하가 신고해야 하는 모든품목들을 기재할 지면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 서식의 반대면에 적혀 있는 중요정보를 읽었으며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습니다.

X

서명 | 날짜 (월/일/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미국을 금지된 품목의 불법적 반입으로부터 보호할책임이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 공무원들은 귀하를 심문하고, 귀하 및 귀하의개인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조사를 위해선정되는 여행자들 중 한 사람이라면, 귀하는 정중하고 전문적이며 품위 있는방식으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국경보호국의감독관들과 여행자 서비스 담당관들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칭찬이나 의견을접수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의견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정보

미국 거주자—해외에서 취득하여 미국으로 가져오는 모든 물품을 신고하십시오.

방문자 (비거주자)—미국에 남아 있게 될 모든 물품의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이 신고서로 모든 물품을 신고하고 가액을 미국 달러로 표시하십시오. 선물의경우에는 소매가액을 기입하십시오.

관세—세관국경보호국의 공무원들이 관세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들은보통 소지품목에 대하여 800 달러까지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자(비거주자)들은 보통 100 달러까지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면세액을 초과하는 첫 1천 달러에 대해 현행 세율로 산정됩니다.

농업 및 야생생물 제품—위험한 농해충과 금지된 야생생물의 반입을 막기 위한제한 품목: 과일, 채소, 식물, 식물제품, 흙, 육류, 육류제품, 조류, 달팽이류및그 외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제품. 세관국경보호국 공무원/세관국경보호국농무전문관/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 검사관에게 해당품목을 신고하지 않는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해당품목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통제물질, 음란 물품 및 독성물질은 일반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미국내로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시에는 여행자들에게 민사법 혹은 형사법상의 처벌이가해질 수 있고 안전 혹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 또는 지급수단의 수송은 금액을 불문하고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미국으로부터 1만 달러(미화 또는 그에 상당한 외화금액 또는 이 둘의 합산)이상을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FinCEN) 105 (구 세관 서식 4790)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수단으로는 주화, 통화, 여행자수표, 그리고 개인수표 또는 자기앞수표및증권과 채권 등의 무기명증권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이 통화 또는지급수단을 소지하도록 한 경우에도 귀하는 FinCEN 105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요구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귀하가 소지중인 총 금액을 신고하지않을 경우 모든 통화 또는 지급수단을 압수당할 수 있으며 귀하는 민사상의 처벌그리고/또는 형사상의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중요정보를 읽고 사실 그대로신고한 후 이 서식의 반대면에 서명하십시오.

물품 기재란

(목록은 다른 세관국경보호국 서식 **6059B**에 계속하여 기재할 수 있음)

	가액	세관국경보호국전용 기재란
총액		

서류 간소화법 안내문: 정부기관은 유효한 관리예산처의 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수집을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정보수집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보수집의 관리번호는 1651-0009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평균 4분 입니다. 귀하는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이 부담 예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90 K Street, NE, 10th Floor, Washington, DC 20229로 보낼 수 있습니다.

CBP Form 6059B (07/24) Korean